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1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및 용역 제공에<br>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이수진의원안) ..... | 3 |



## I. 개요

###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13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6. 21.
- (3) 회 부 일 : 2024. 6. 27.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그러나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자 직접 고용을 위해 주휴·사회보험료·퇴직금 등 노무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는 이용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직접고용방식이 기존의 직업소개방식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지원이 필요함.

이에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

세액을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및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및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이수진의원안)

| 현 행                                                                                     | 이수진의원안                                                                                                                                                                                                                            |
|-----------------------------------------------------------------------------------------|-----------------------------------------------------------------------------------------------------------------------------------------------------------------------------------------------------------------------------------|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04조의34 신설)<br><input type="checkbox"/> 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액(500만원 한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br><input type="checkbox"/> 면제대상<br>- <신 설> | <input type="checkbox"/> 면제대상에 가사서비스 용역 추가<br><input type="checkbox"/> 면제대상<br>-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

\* 이수진의원안 2024. 6. 21. 제출(의안번호 813)

☐ 개정안은 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에 따른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500만원의 한도의

####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 것

그 지출액 중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② 같은 법 제2조제4호2)의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 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5일 제정되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었음.

참고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등의 일과 가구 구성원의 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함<sup>3)</sup>.

---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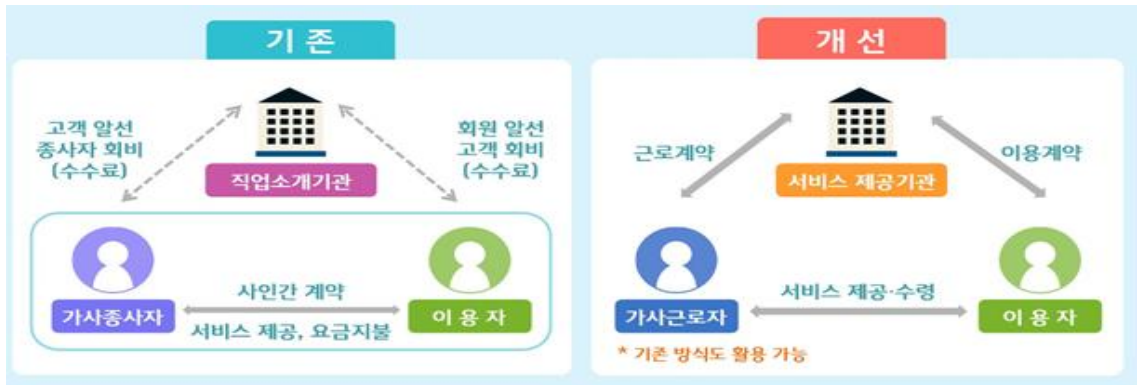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형태 변화]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책임 등 부담 (※ 직업소개기관의 소개 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에 요금 지불



자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1847호), 2020. 9.]

□ 개정안에 대해서는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과, ②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분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① 개정안은 근로소득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출한 5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하여 15%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는 사인 간 계약을 통해 고용된 가사노동종사자보다 안정적인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4대 보험료·퇴직금과 같은 노무비용이 가사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이므로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향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22년 기준 61.8%로 OECD 평균 65.8%에 비해 4.0%p 낮은 수준<sup>4)</sup>이므로,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여성이 기존의 출산·보육·육아 등의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있고, 전체 근로소득자의 33.6%를 차지하는 면세점 이하

---

4) 출처: e-나라지표, 여성고용동향

의 저소득 근로자<sup>5)</sup>의 경우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둘째, 간병서비스, 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신설되는 경우 다른 서비스와의 과세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음.

□ 다음, ②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가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독려하고 가사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 다만, 2022년 1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sup>6)</sup>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반영되었음.

---

5) 2022년 귀속소득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는 690만 명(면세자 비율 33.6%)이며, 전체 면세자의 96.3%는 총급여 4천만원 이하자임.(자료: 국세통계연보)

6)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              |
|--------------|
| 문 의 처        |
| 02)6788-5160 |